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 ] 변경 [ ] 이동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심사관
신고인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	
체류국 내 연락처(전화번호/E-mail)	기존 재외국민 등록공관명	
[ ] 새로운 주소지 신고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생년월일 [ ] 체류국 최초 입국일 [ ] 병역관계 [ ] 그 밖의 등록사항		
신고 사항	종전	변경(이동) 후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 이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

대사관 · 총영사관(

분관 · 출장소)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합니다) 2. 체류국의 사증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해당합니다) 3. 새로운 주소나 거소가 소재한 체류국의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체류국이 변경된 경우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신청의 경우 해당합니다) 5.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존 등록사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성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 입국일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성별 및 생년월일): 주민등록표 초본 2. 여권번호: 여권 3. 병역관계: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4. 체류국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안내사항

-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국내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하며, 영문 성명의 변경 시에는 체류국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는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재외국민등록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재외국민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을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과의 관계